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**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** 전문공보담당자 형사 1부장 허준	**보 도 자 료** **2021. 10. 6.(수)**
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	**목포세관** 공보담당자 전진우	전화번호 : 061-280-4308

제 목	**검찰·세관이 협력, 해외구매대행 가장으로 약 22억 원 상당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밀수입한 사범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**목포지청**(지청장 윤중현)과 **목포세관**(세관장 성용욱)은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대행 업체로 행세하며 약 22억 원 상당의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인도산 전문의약품을 밀수, 국내에 유통한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**위 조직 자금관리총책을 구속 기소, 자금관리총책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의약품 구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한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**하였음

- 검·세관은 **수사 초기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수시로 연락**하며 공조한 결과 위 조직이 수입신고 대상인 의약품을 신고 없이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한 정황을 규명하고, **위 자금관리총책의 약 9,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, 추징보전조치 실시**함

- 수사과정에서, 검찰은 이 사건 자금관리총책이 의약품 밀수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들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밝히고, 그와 같이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**2개의 유령법인들에 대해 상법 제176조에 의거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**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※ [별첨1,2] 참조

Ⅱ 수사 경과

- ’21. 6. 목포세관, 의약품 밀수입 혐의(관세법, 의약법위반) 인지
- ’21. 9. 8. 목포세관, A○○ 체포·A○○ 등 주거지 압수수색
- ’21. 9. 10. 목포세관, A○○ 구속

※ 21. 9. 15. 목포세관, A○○에 대한 약 9,000만 원 상당 재산 몰수, 추징보전

- ’21. 10. 1. 검찰, A○○, B○○, C○○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 추가 인지
- ’21. 10. 5. 검찰, A○○ 등 기소, 유령법인 2개 해산명령청구 예정

※ 검찰, B○○, C○○의 범죄은닉 수익금 총 1,96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실시, B○○, C○○ 각 설립 법인 해산명령 청구

Ⅲ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도산 전문의약품을 밀수하여 무분별하게 유통하여 국민 보건을 위태롭게 한 중대 범죄를 검찰과 세관이 신속히 수사함
  - 세관은 개인사용우편물(미화 150불 이하) 구입방식의 **해외직구방식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가장하여 의약품을 밀수한 혐의를 규명, 관련자를 체포**하였고, **조직원의 재산을 신속히 몰수, 추징보전**함
  - 검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참관, 구속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조직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며, **자금관리총책이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, 법인 명의 계좌를 유통한 것을 확인하여 공범 2명을 인지하고 공범의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**함
  - 밀수범행에 이용될 목적으로 설립된 **유령법인들에 대해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**하여 법인의 무분별한 난립을 저지하여 공익 대변 예정
- 현재 일본에 거주 중으로 추정되는 밀수판매 총책에 대하여는 통신영장 발부 받아 계속 추적 중임
- 목포지청과 목포세관은 밀수 범죄에 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**밀수사범 근절에 노력**하고,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**공익적인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**

[별첨 1]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(죄명)	처분
1	A○○(28세, 무직) **자금관리총책**	• 의약품 밀수조직과 공모하여, '20. 8.~ '21. 7. 약 22억 상당의 허가받지 않은 인도산 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하고,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**[관세법위반, 약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** • B○○,C○○과 순차 공모하여, '20. 11.~'21. 6. 유령법인 2개를 설립, 자본금 납입을 가장, 위 법인 명의 계좌 4개를 개설 **[상법위반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,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, 업무방해]** • 밀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, '20. 11.~ 21. 9.경 유령법인 명의 4개 계좌 전달, 1개 계좌 보관 **[전자금융거래법위반]**	'21. 10. 5. 구속 기소
2	B○○(23세, 무직)	• A○○와 공모하여, 20. 11.~ 20. 12.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甲 유령법인을 설립하고, 위 법인 명의 계좌 2개를 개설 **[상법위반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,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, 업무방해]**	'21. 10. 5. 불구속 기소
3	C○○(23세, 무직)	• A○○와 공모하여, 21. 5.~ 21. 6.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乙 유령법인을 설립하고, 위 법인 명의 계좌 2개를 개설 **[상법위반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,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, 업무방해]**	'21. 10. 5. 불구속 기소

[별첨 2]

【사건개요도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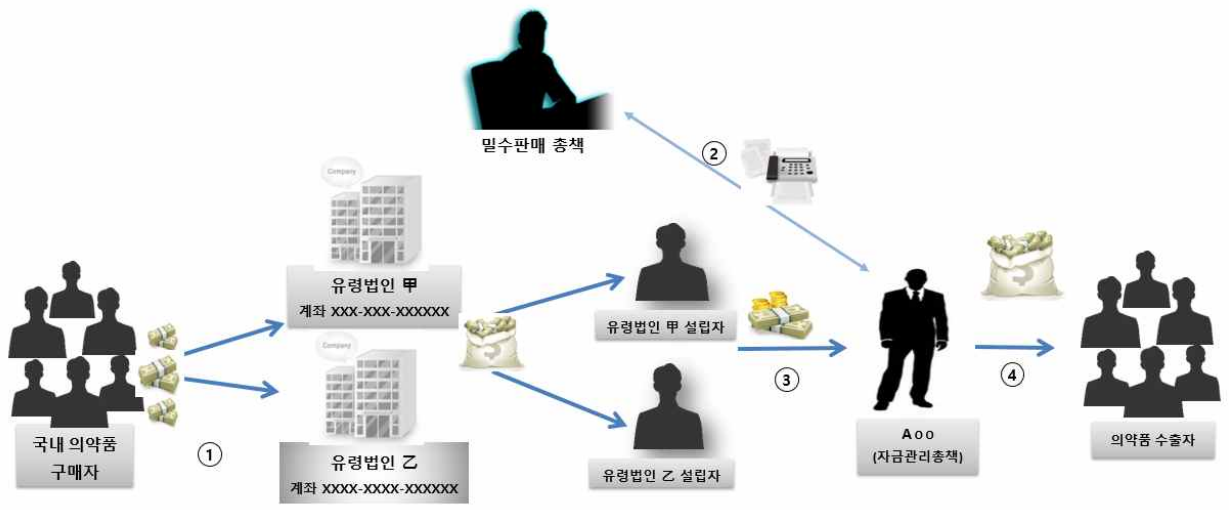

1. 국내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불상자들이 유령법인 B 계좌, 유령법인 C 계좌로 의약품 구매 대금 이체
2. 밀수판매 총책(조직원)이 AOO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송금 등 지시
3. AOO의 지시로 BOO 및 COO이 현금 인출 후 AOO에게 전달
4. AOO이 다수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약품 밀수대금을 해외로 분산 송금